# 이사회 회의록

2024년 5월 27일

사회복지법인 효광원

# 사회복지법인 효광원 제2차 임시이사회 회의록

| 구 분 | 내 용 |
|---|---|
| 소집 일 시 | 2024년 5월 20일 |
| 개최 일 시 | 2024년 5월 27일 13:00~14:00 |
| 이 사 정원 | 노승환, 나기웅, 김 현, 강만식, 김명희, 안영선, 김명희 |
| 참석 이사 | 대표이사 노승환, 이사 나기웅, 이사 김 현, 이사 강만식,<br>이사 안영선, 이사 김명희, 이사 김명희 |
| 참석 감사 | 감사 박원규, 감사 고태수 |
| 회의 안건 | 제1호 의안 - 사회복지법인 효광원 기본재산처분 심의<br>1) 사회복지법인 효광원 임대에 따른기본재산처분<br>2) 차고 멸실 기본재산처분<br>제2호 의안 - 사회복지법인 효광원 정관변경(안) 심의 |

가. 성원 보고

- 노승환 대표이사 : 안녕하세요.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인사와 효광원의 원활한 운영과 복지 발전을 위한 좋은 제언을 청하며 인사말을 마치다.

나. 개회선언

- 노승환 대표이사 : 이사 7명 중 7명과 감사 2명 중 2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를 선언하다.

1. 부의 안 심의

**가. 제1호 의안 1) 「사회복지법인 효광원 임대에 따른 기본재산 처분 승인 」 심의**

- 노승환 대표이사: 제1호 의안 기본재산처분(임대) 승인을 상정한다고 하고, 제1호 의안에 대하여 김현 이사님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다.
- 김현 이사: 3월 정기 이사회에서 말씀드렸던 효광원에 태양광설치에 대해 기본재산처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재산 등) 3항 1호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기본재산처분) 1항 1호에 의거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효광원 건물 유휴공간을 임대하고자 임시이사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을 기후 위기 극복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천주교 대전교구에서 2040 탄소중립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전환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불휘햇빛발전협동조합에 유휴공간을 무상 임대 제공하여 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을 설치하여 유용하게 건물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 나기웅 이사 : 비용은 누가 어떻게 처리하나요?
- 김현 이사 : 저희는 장소만 무상 임대하고 비용은 불휘햇빛발전협동조합에서 부담합니다.
- 안영선 이사 : 수입은 전혀 없는 건가요?
- 노승환 대표이사: 수입금이 생기면 효광원에 기부금을 준다고 하였으며, 법인으로 받아 시설로 전출하여 시설에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재산조성비,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 박원규 감사 : 기부금은 얼마나 받나요?
- 노승환 대표이사 :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니고 태양광 판매 매출에 30%를 매출 발생한 다음 연도 1월 말에 기부해준다고 합니다. 기부금을 받으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주기로 했습니다.
- 안영선 이사: 임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김 현 이사 : 준공 후 20년입니다.
- 김명희 이사: 태양광을 설치하면 관리 유지는 어떻게 하나요?
- 김 현 이사 : 관리 유지는 불휘햇빛발전협동조합에서 다 합니다.
- 나기웅 이사: 기본재산 처분절차가 원활하고 조속하게 진행되기를 바라며 이사님들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 강만식 이사: 동의에 재청합니다.
- 노승환 대표이사: 제1호-1 의안인 「기본재산 처분 승인」에 대해서 동의와 재청이 있었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고 그대로 받는 것이 가하다면 "예"라고 답하여 줄 것을 청한다.
- 참석 이사 일동 : "예" 라고 답한다.
- 노승환 대표이사 : 동의와 재청에 이어 참석하신 전 이사님, 감사님들께서 가하다고 표하셨기에 제1호 의안인 「기본재산 처분 승인 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하다.

가. 제1호 의안 2) 「차고 멸실로 인한 기본재산 처분 승인」 심의

- 노승환 대표이사 : 제1호 의안-2 기본재산처분 승인을 상정한다고 하고, 효광원 원장님이신 김현 이사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김 현 이사 : 차고는 설립하신 김영환 신부님 차고지로 건축하였으나 현재 창고로 쓰고 있으며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김영환 신부님 지인께서 올해 효광원 개원 기념 40주년으로 김영환 신부님 기념비를 세우고, 화단 녹지 정비를 조성해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들이랑 회의 시간에 논의한 결과 차고를 멸실하여 더 좋은 화단을 조성하여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어 멸실하고자 합니다.
- 노승환 대표이사: 「기본재산 처분 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태수 감사: 차고 멸실 비용도 설립하신 신부님 지인이 부담하시나요?
- 김현 이사: 멸실 비용은 저희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견적을 받았는데 4,300,000원이

예상되어, 자부담으로 지출하고자 합니다.
- 안영선 이사 : 화단을 새롭게 정비하는 기회도 생기고 아이들이 설립하신 신부님 기념비를 보면서 신부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질 것 같습니다. 이사님들 의견에 동의합니다.
- 김명희 이사: 동의에 제청합니다.
- 노승환 대표이사: 제1호-2 의안인 「기본재산 처분 안」에 대해서 동의와 재청이 있었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고 그대로 받는 것이 가하다면 "예" 라고 답하여 줄 것을 청한다.
- 참석 이사 일동 : "예" 라고 답한다.
- 노승환 대표이사 : 동의와 재청에 이어 참석하신 전 이사님, 감사님들께서 가하다고 표하셨기에 제1호 의안인 「기본재산 처분 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하다.

**나, 제2호 의안:「사회복지법인 효광원 정관변경 (안) 승인」심의**
- 노승환 대표이사: 제2호 의안 사회복지법인 효광원 정관변경(안) 승인을 상정한다고 하고, 제2호 의안 사회복지법인 효광원 정관변경(안) 승인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의 정관 준칙에 따라 제1호 의안 기본재산처분 승인안이 결정되는 대로 정관 제6조(자산관리)를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 이사 : 기본재산처분 허가승인 나면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의 정관 준칙에 따라 정관변경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기본재산처분허가 승인에 따라 정관 변경안에 동의합니다.
- 나가웅 이사 : 동의에 재청합니다.
- 노승환 대표이사: 제2호 의안인 「사회복지법인 효광원 정관 변경안」에 대해서 동의와 재청이 있었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고 그대로 받는 것이 가하다면 "예" 라고 답하여 줄 것을 청한다.
- 참석 이사 일동 : "예" 라고 답한다.
- 노승환 대표이사 : 동의와 재청에 이어 참석하신 전 이사님, 감사님들께서 가하다고 표하셨기에 제2호 의안인 「사회복지법인 효광원 정관변경 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하다.
- 노승환 대표이사 : 또 다른 안건이 있으신가 묻는다.
- 참석 이사 일동 : 다른 안건이 없다고 말한다.
- 다른 안건이 없으시면 이상 폐회에 동의하는지 묻는다.
- 나기웅 이사: 동의합니다.
- 참석 이사 일동 : 재청하다.
- 노승환 대표이사: 폐회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음을 말하고 2024년 임시이사회에 함께 해주신 이사님 감사님 감사 인사하고 의견을 반영하여 더욱 내실 있고 발전적인 효광원 시설 운영에 노력하겠다고 말한다. 회의록 서명에 참여하여 줄 것을 청하며 2024년 임시이사회의 폐회를 선언하다.

폐회 시간 2024년 5월 27일 오후 14시 00분

이상으로 위 사항의 심의를 종료하고 출석한 이사들이 기명날인하다.

사회복지법인 효광원

대표이사 노승환 : (인)

이 사 김현 : (인)

이 사 안영선 : (인)

이 사 나기웅 : (인)

이 사 김명희 : (인)

이 사 강명의 : (인)

이 사 강깐식 : (인)

감 사 박원규 : (인)

감 사 고태수 : (인)